

제17조(비밀유지의 의무)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위원과 간사는 직무상 알게 된 자료의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4장 등록 자료 관리 등

제18조(기록관리) 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 사항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록·관리한다.

② 등록증 발급 시 별지 제1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그 목록을 관리한다.

③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통계기반정책관리를 위해 시행령 별표에 따른 자료 유형별 등록건수 및 말소건수를 기록·관리한다.

제19조(등록말소) 시행령 제4조의5제3항에 따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의 등록말소심사를 할 경우 중 합심사위원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준속기한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7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※ 별지 및 전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(고시란)을 참조바랍니다.

●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-42호

관보 제19563호(2019. 8. 9.)에 게재된 “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19-41호(규제자유특구 지정)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19년 8월 16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관보 내용	No	특구사업자명	대표자명	주소
	5	(주)시엔케이	권용범	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
	8	(주)한중모터스	이화영	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
	10	(주)성지기업	정한섭	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-22
정정 사항	No	특구사업자명	대표자명	주소
	5	(주)시엔케이	이용우	경북 칠곡군 기산면 주산로 837
	8	(주)한중모터스	강영권	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220
	10	(주)성지기업	이명숙	부산시 사상구 삼락동 342-22
비고	관보 제19563호(2019. 8. 9.) 115쪽, 116쪽 “4.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표” 위에서 6, 9, 11번 줄			

●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9-13호

「전파법」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6호에 따라 「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 기준」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-10호, 2019. 6. 20.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19년 8월 16일

국립전파연구원장

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

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